

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장홍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238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년 11월 8일

발 의 자 : 장홍순 의원(1명)

찬 성 자 : 허기희, 김제리, 주찬식,
진두생, 김인제, 김구현,
유찬중, 남창진, 전철수
의원(9명)

1. 제안이유

보도상영업시설물의 적정분포,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에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운영자를 위원으로 포함하여 실제 운영자의 의견도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관리 등에 신중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에 2명의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를 포함하도록 함(안 제4조제1항).
- 나. 위원회 부위원장을 “도시안전기획관”에서 “안전총괄관”으로 수정함(안 제4조제2항제2호).

다.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위원회는 자치구청장이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운영자 각각 1명씩 추천한 자 중 무작위 추첨에 의해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운영자 각각 1명씩 위촉하도록 함(안 제4조제3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

(1) 입법예고 결과 : 해당없음

(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(3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1호 중 “7명”을 “5명”으로, “나머지”를 “2명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 중에서 위촉하며, 나머지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“도시안전기획관”을 “안전총괄관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위원회는 자치구청장으로부터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운영자 중 각각 1명씩 추천 받은 자 중 무작위 추천에 의해서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운영자 각각 1명씩 위촉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회의 개최 시 위촉 또는 임명하고,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 또는 해임된다.</p> <p>1. 위원 중 7명은 법조인·사회복지전문가·시민단체대표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등 사회적계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, 나머지 3명은 관련 공무원으로 임명한다.</p> <p>2.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총괄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안전기획관으로 한다.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	<p>제4조(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-.</p> <p>1. ----- 5명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-- 2명은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중에서 위촉하며, 나머지 -----.</p> <p>2. ----- 안 ----- ----- 전총괄관 -----. ----- ----- -----</p>

<신 설>

③ ~ ⑥ (생략)

3.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위원은 자치구청장으로부터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운영자 중 각각 1명씩 추천 받은 자 중 무작위 추첨에 의해서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운영자 각각 1명씩 위촉한다.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